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환경부 (대기관리과)
연 월 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, 배출량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대기환경보전법」이 개정(법률 제16604호, 2019. 11. 26. 공포, 2020. 5. 27 시행)됨에 따라 검증체계의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,

자가측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근거 규정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신설하고, ‘20년부터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이 추가됨에 따라 부과금 산정을 위한 서식(확정배출량명세서)에 질소산화물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○○○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3. . ~ 4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7조제4항”을 “법 제17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검증)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결과에 대하여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(이하 “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”라 한다)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게 해야 한다.

1.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 및 자가측정에 따라 조사 원시자료 및 배출량 자료
 2. 배출량 산정을 위한 연료사용량, 제품생산량 등 배출원 조사 자료
-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의 절차, 검증체계의 구축·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을 각각 “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”으로 한다.

제5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

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법 제39조제2항”을 “법 제39조제4항”으로 한다.

③ 사업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매 반기별로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 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한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, 지방환경청장,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·보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79조의8부터 제79조의14까지를 제79조의9부터 제79조의15까지로 하고, 제7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9조의8(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이 관리하는 정보)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한다.

1. 충전시설의 위치 및 상태
2. 충전시설의 종류
3. 충전시설의 충전횟수 및 충전량
4. 충전시설별 결제정보(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 사업자간 요금정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)

별표 18 비고 제13호 중 “한다”를 “한다(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폐차되는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,000km로 할 수 있다)”로 한다.

별표 36 제2호가목 13)부터 15)까지를 각각 14)부터 16까지로 하고, 13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3)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가)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나)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 는 행위 다)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	법 제39 조	경고	조업정지 5일	조업정지 10일	조업정지 30일
		조업정지 90일	허가취소 또는 폐쇄		
		경고	경고	조업정지 5일	조업정지 10일

별지 제14호4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지 제14호서식]

(앞쪽)

확 정 배 출 량 명 세 서							
제 출 자	① 상 호 (사업장 명칭)				② 종 별		
	③ 성 명 (대표자)				④ 생 년 월 일		
	⑤ 주 소		(전화번호:)				
⑥ 사 업 장 소 재 지			(전화번호:)				
1. 법 제 39조에 따른 측정결과가 없는 경우 확정배출량							
황 산 화 물	⑦ 배출구 번호	⑧ 주요배출시설 명	⑨ 사용연료명	⑩ 사용연 료량(톤, kl/반기)	⑪ 배출 계수	⑫ 황함유량(%)	⑬ 확정배출 량 (kg/반기)
	⑭ 연료종류별 사용량 합계(톤, kl/반기)				⑮ 확정배출량 합계 (kg/반기)		
먼 지	⑦-1 배출 구번호	⑧-1 주요배출시 설명	⑨-1 사용연료 명	⑩-1 사용 연료량 (톤, kl/ 반기)	⑪-1 배 출계 수	⑬-1 확정배출량 (kg/반기)	
	⑭-1 연료종류별 사용량 합계(톤, kl/반기)				⑮-1 확정배출량 합계 (kg/반기)		
질	⑦-2 배출	⑧-2 주요배출시	⑨-2 사용연료	⑩-2 사용	⑪-2 배	⑬-2 확정배출량	

소 산 화 물	구번호	설명	명	연료량 (톤, kl/ 반기)	출계 수	(kg/반기)					
	⑭-2 연료종류별 사용량 합계(톤, kl/반기)					⑮-2 확정배출량 합계 (kg/반기)					
2. 법 제39조에 따른 측정결과가 있는 경우											
황 산 화 물	⑯ 자가측정에 의한 확정배출량	⑯-1 배출구 번 호	⑯-2 측정 일자	⑯-3 측정 농도 (ppm)	⑯-4 일일 유량 (Sm ³ / 일)	⑯-5 일일 배출 량 (kg/ 일)	⑯-6 일일평균배 출량 (kg/일)	⑯-7 조정된 일일 평균 배출량	⑯-8 조업 일수	⑯-9 확정배출량 ⑯-6×⑯-8 또는 ⑯-7×⑯-8	
	⑰ 검사결과에 의한 배출량	⑰-1 배출구 번 호	⑰-2 측정 일자	⑰-3 측정 농도 (ppm)	⑰-4 일일 유량 (Sm ³ / 일)	⑰-5 일일 배출 량 (kg/ 일)	⑱ 확정배출량 합계 (kg/반기)				
	먼 지	⑲ 자가측정에 의한 확정배출량	⑲-1 배출 구 번 호	⑲-2 측정 일자	⑲-3 측정 농도 (mg/S m ³)	⑲-4 일일 유량 (Sm ³ / 일)	⑲-5 일일 배출 량 (kg/ 일)	⑲-6 일일평균배 출량 (kg/일)	⑲-7 조정된 일일 평균 배출량	⑲-8 조업 일수	⑲-9 확정배출량 ⑲-6×⑲-8 또는 ⑲-7×⑲-8
⑳ 검사결과에 의 한 배출량		㉑-1 배출 구 번 호	㉑-2 측정 일자	㉑-3 측정 농도 (mg/S m ³)	㉑-4 일일 유량 (Sm ³ / 일)	㉑-5 일일 배출 량 (kg/ 일)	㉒확정배출량 합계 (kg/반기)				

						일)				
질 소 산 화 물	㉔ 자가측정에 의한 확정배출량	㉔-1 배출구 변 호	㉔-2 측정 일자	㉔-3 측정농도 (mg/Sm³)	㉔-4 일일유 량 (Sm³/일)	㉔-5 일일 배출 량 (kg/ 일)	㉔-6 일일평균 배출량 (kg/일)	㉔-7 조정된 일일 평균 배출량	㉔-8 조업일 수	㉔-9 확정배출량 ㉔-6×㉔-8 또는 ㉔-7×㉔-8
	㉔ 검사결 과에 의 한 배 출량	㉔-1 배출구 변 호	㉔-2 측정 일자	㉔-3 측정농도 (mg/Sm³)	㉔-4 일일유 량 (Sm³/일)	㉔-5 일일 배출 량 (kg/ 일)	㉔확정배출량 합계 (kg/반기)			

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에 따라 년 반기의 확정배출량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※ 첨부서류

1. 황합유분석표 사본 1부(황합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해당 부과기간 동안의 분석표만 제출합니다)

2.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(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
3.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(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
4. 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부 사본 1부(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, 매년 1회 자가측정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가측정결과를 제출합니다)

* 비고: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·보존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(신문용지 54g/m²)
(뒤쪽)

※ 작성 요령
1. ①란부터 ⑥란까지는 각 항별로 정해진 내용을 적습니다.

2. ⑦란과 ⑦-1, ⑦-2란은 배출구번호를 순서대로 적습니다.
3. ⑧란과 ⑧-1, ⑧-2란은 ⑦란과 ⑦-1, ⑦-2란의 배출구 번호에 적힌 배출구와 관련이 있는 배출시설명을 적습니다. 다만, ~~황산화물~~-배출하는 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배출시설별로 각각 적습니다.
4. ⑨란과 ⑨-1, ⑨-2란은 ⑧란과 ⑧-1, ⑧-2란의 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연료명을 적습니다(석탄, 유연탄, 무연탄, BC유, BA유 등).
5. ⑩란과 ⑩-1, ⑩-2란은 ⑦란과 ⑦-1, ⑦-2란의 배출구에서 반기별로 사용할 연료의 양을 예측하여 적습니다(석탄, 유연탄 등 고체연료는 톤으로, 액체연료는 kl 단위로 표시합니다).
6. ⑪란과 ⑪-1, ⑪-2란은 ⑨란과 ⑨-1, ⑨-2란의 연료에 해당하는 배출계수를 적습니다(배출계수는 환경부장관이 별도 고시합니다).
7. ⑫란은 ⑨란의 연료에 함유된 황의 양을 연료별로 각각 적습니다.
8. ⑬란과 ⑬-1, ⑬-2란은 사용연료량, 배출계수, 황함유량(황함유량은 황산화물 산정시에 한한다)을 각각 곱하여 확정배출량을 배출구별로 산정하고 이를 적습니다.
9. ⑭란과 ⑭-1, ⑭-2란은 ⑨란과 ⑨-1, ⑨-2란과 ⑩란과 ⑩-1, ⑩-2란을 참고하여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와 연료종류별 사용량 합계를 적습니다.
10. ⑮란과 ⑮-1, ⑮-2란은 ⑬란과 ⑬-1, ⑬-2란의 각 배출구별 확정배출량을 합하여 사업장 전체의 확정배출량을 적습니다.
11. ⑯-1란과 ⑯-1란, ⑯-2란은 배출구번호를 순서대로 적습니다.
12. ⑯-2란과 ⑯-2란, ⑯-2란은 배출구별로 자가측정한 것을 일자별로 적어야 하며, 하나의 배출구에는 측정일자를 적어도 3회 이상 적어야 합니다.
13. ⑯-3란과 ⑯-3란, ⑯-3란은 자가측정 당시의 자가측정도를 측정날짜별로 각각 적습니다.
14. ⑯-4란과 ⑯-4란, ⑯-4란은 자가측정 당시의 일일유량을 계산하여 적습니다. 이 경우 일일유량은 자가측정농도 측정시에 측정된 측정유량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하며, 일일유량은 시간당 측정유량과 측정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시간의 평균치를 곱하여 적습니다.
15. ⑯-5란과 ⑯-5, ⑯-5란은 자가측정 당시의 일일배출량을 계산하여 적습니다. 이 경우 일일배출량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.

$$\text{황산화물 일일배출량(⑯-5)} = \text{측정농도(⑯-3)} \times \text{일일유량(⑯-4)} \times 10^{-6} \times 64 \div 22.4$$

$$\text{먼지 일일배출량(⑯-5)} = \text{측정농도(⑯-3)} \times \text{일일유량(⑯-4)} \times 10^{-6}$$

$$\text{질소산화물 일일배출량(⑯-5)} = \text{측정농도(⑯-3)} \times \text{일일유량(⑯-4)} \times 10^{-6} \times 46 \div 22.4$$
16. ⑯-6란과 ⑯-6란, ⑯-6란은 측정일자별로 각각 계산된 일일배출량을 배출구별로 합한 후 이를 자가측정 횟수로 나누어 해당 배출구의 일일평균배출량으로 적습니다. 예를 들어, 1번 배출구에 3회에 걸쳐 자가측정한 황산화물의 일일배출량(⑯-5)이 각각 30kg, 27kg, 33kg이라면 황산화물의 일일평균배출량은 $(30+27+33) \div 3 = 30\text{kg}$ 이 됩니다.
17. ⑯-7란과 ⑯-7란, ⑯-7란은 ⑯-1란 또는 ⑯-1란, ⑯-1란에 적을 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⑯-1란 또는 ⑯-1란, ⑯-1란의 배출구번호와 ⑯-1란 또는 ⑯-1란, ⑯-1란의 배출구번호가 서로 같은 경우에만 적습니다. 이 경우 그 산정방식은 ⑯-6란, ⑯-6란, ⑯-6란의 일일평균배출량과 ⑯-5란, ⑯-5란, ⑯-5란의 일일배출량을 더한 후 이를 나누어 산정합니다.
 - 1번 배출구의 일일평균배출량이 30kg인데 ⑯-5의 검사결과에 의한 1번 배출구의 일일배출량이 40kg인 경우에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은 $(30+40) \div 2 = 35\text{kg}$ 이 됩니다.
 - 만약, 1번 배출구의 ⑯-5의 검사결과에 의한 일일배출량이 각각 40kg과 50kg으로 2번이 있다면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은 $(30+40+50) \div 3 = 40\text{kg}$ 이 됩니다.
18. ⑯-8란과 ⑯-8란, ⑯-8란은 해당 배출구별로 조업일수를 ~~확정배출량~~을 적습니다.
19. ⑯-9란 ⑯-9란, ⑯-9란은 각 배출구별로 확정배출량을 적습니다. 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 가. ⑯-7항에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: 황산화물 확정배출량(⑯-9) =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(⑯-7) × 조업일수(⑯-8)
 나. ⑯-7항에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: 황산화물 확정배출량(⑯-9) =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(⑯-6) × 조업일수(⑯-8)
 다. ⑯-7항에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: 먼지 확정배출량(⑯-9) =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(⑯-7) × 조업일수(⑯-8)
 라. ⑯-7항에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: 먼지 확정배출량(⑯-9) =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(⑯-6) × 조업일수(⑯-8)
 마. ⑯-7항에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: 질소산화물 확정배출량(⑯-9) =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(⑯-7) × 조업일수(⑯-8)
 바. ⑯-7항에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: 질소산화물 확정배출량(⑯-9) =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(⑯-6) × 조업일수(⑯-8)
20. ⑮란과 ⑮란, ⑮란은 각 배출구별로 산정된 확정배출량을 합하여 사업장 전체의 확정배출량 합계를 적습니다.

별지 제2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반기별 자가측정 결과 보고서

제출인	상호(사업장명칭)			
	성명(대표자)		성명(관리담당자)	
	주 소		전화번호	
사업장 분류		[]1종 []2종 []3종 []4종 []5종	반(년도상·하반기)	

[illegible]
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붙임: 시험채취기록부, 시험성적서 등 배출구별 자가측정한 기록 사본

이
예
로

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2조제3항의 신설규정은 2020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 량 조사) ① (생 략)	제16조(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 량 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법 제17조제4항</u> 에 따른 배출 원의 조사방법, 배출량의 조사 방법과 산정방법(이하 “배출량 등 조사·산정방법”이라 한다) 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<u>법 제17조제5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제16조의2(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의 검증)</u> ① <u>환경부장관은 제16 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배출 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결 과에 대하여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7 조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 터(이하 “국가미세먼지정보센 터”라 한다)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게 해야 한 다.</u>
	1. <u>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 및 자가측정에 따라 조사 원시자 료 및 배출량 자료</u>

제36조(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) ① 영 별표 1의 3에 따른 1종·2종·3종사업장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② 영 별표 1의3에 따른 4종·5종사업장을 설치·운영하는 사

2. 배출량 산정을 위한 연료사용량, 제품생산량 등 배출원 조사 자료

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의 절차, 검증체계의 구축·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36조(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) ① -----

-----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

장-----

-----.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③ <u>법 제39조제2항</u>에 따른 자가 측정의 대상·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. <신 설> <u>제79조의8 ~ 제79조의14</u> (생 략)	<u>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 록·보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 지 않을 수 있다.</u> ④ <u>법 제39조제4항</u>----- ----- -----. <u>제79조의8(전기자동차 충전 정보 관리 전산망이 관리하는 정보)</u> <u>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기자 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한다.</u> <u>1. 충전시설의 위치 및 상태</u> <u>2. 충전시설의 종류</u> <u>3. 충전시설의 충전횟수 및 충 전량</u> <u>4. 충전시설별 결제정보(「전기 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전기자 동차충전사업자간 요금정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)</u> <u>제79조의9 ~ 제79조의15</u> (현행 제 79조의8부터 제79조의14와 같음)
---	---